

제2024-63호 2024년 7월 11일(목)

人



보

시 정 지 표

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홍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고 시

| ○ 여수시 고시 | 제2024-297호 | 여수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| 1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| 이 여수시 고시 | 제2024-299호 |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(집단에너지 공급설비) | 4 |
| 이 여수시 고시 | 제2024-304호 | 여수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, 조성계획)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| 5 |
| o 여수시 고시 | 제2024-306호 |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 | 7 |

공 고
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099호 | 지적재조사시업 조정금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8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|----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06호 |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 | 9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07호 | 세외수입(사용료) 독촉(체납)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| 10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10호 |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| 11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11호 |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 | 17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14호 | 국동항 내 장애물(방치선박) 제거 공고 | 18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15호 | 공유수면 점·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| 23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16호 |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| 25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20호 | 도로지정 공고[소라면 현천리 933-2번지] | 27 |
| 0 여수 | 시 공고 | 제2024-2123호 | 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(융자)시업 모집 공고 | 29 |

| 회 | | | | |
|---|--|--|--|--|
| 람 | | | | |

여수시 고시 제2024-297호

여수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7. 11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사업(녹지: 320, 공원: 227)

나. 명 칭: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, 어린이공원) 조성사업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면 적: 6,713㎡

나. 규 모

| 구 분 | 결 정(㎡) | 금회 시행(㎡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|
| 경관녹지 320 | 3,104 | 3,104 | |
| 어린이공원 227 | 3,609 | 3,609 | |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김민곤

나. 주 소: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년월일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27. 2.28.
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: 붙임
- 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새로 설치되는 공원, 녹지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
- 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2061-659-4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
- 토지조서(경관녹지)

| 연 | | 소재지 | | 면적 | (m²) | | 소유자 | 소 · | 유권이외의 | 의 권리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
| 변 - 변 | 동 | 지번 | 지목 | 지적 | 편입 | 성명 | 주소 | 성 명 | 주소 | 권리의 종류 | 비고 |
| 7 | # | 11필 | 지 | 8,392 | 3,104 | | | | | | |
| 1 | | 산63-3 | 임 | 99 | 99 | 김감두 | 시전리 333 | | | | |
| 2 | | 산67-3 | 임 | 1,785 | 822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3 | | 산68-4 | 임 | 397 | 200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4 | | 49-2 | 답 | 288 | 103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5 | | 50-2 | 전 | 1,086 | 124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6 | 하다 여이 나이 | 53-1 | 전 | 1,122 | 231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7 | | 98–1 | 전 | 1,513 | 677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8 | | 101-3 | 전 | 55 | 1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9 | | 102-2 | 전 | 1,050 | 354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10 | | 108-2 | 전 | 458 | 458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| 11 | | 924-10 | 구 | 539 | 35 | 국토교통부 | | | | | |

○ 토지조서(어린이공원)

| 연 | | 소재지 | | 면적(| m²) | = | 소유자 | | 소유권이외의 권리 | | |
|----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번 | 냥 | 지번 | 지목 | 지적 | 편입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권리의 종류 | 비고 |
| 7: | # | 2필 | 시 | 35,546.8 | 3,609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무진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36(방림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푸른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6(노대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정다운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1(두암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광주앙 새마 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5(유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진남 새마 을 금고 |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1-1(광무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동부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9 (중흥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대광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(동명동) | 근저 당권 | |
| 1 | | 3 | 대 | 32,824.8 | 3,383 | 신기주공 지역 | 여수시 쌍봉로 188 | 동광주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25(산수동) | 근저 당권 | 대지권 설정 |
| ' | 신 기 동 | 3 | ЧI | 32,024.0 | 3,333 | 시크 주택조합 | 188, 2층(신기동) | 양동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2길 24(양동) | 근저 당권 | 580/580 |
| | | | | | | | | 예향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31-1(오치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신흥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19번길 2(광천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순천만 새마을 금고 |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2길 22(장천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중흥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292(중흥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계림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60(계림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온누리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204번길 6(양동) | 근저 당권 | |
| | | | | | | | | 동명 새마을 금고 |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77(동명동) | 근저 당권 | |
| 2 | | 175 | 임 | 2,722 | 226 |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| 여수시 쌍봉로 188, 2층(신기동) | | | | |

여수시 고시 제2024-299호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」제17조,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」 제2조에 따라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합니다.

2024. 7.11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: 집단에너지 공급설비(열병합발전소) 조성사업
- 2.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(변경없음)

가. 성 명: 티더블유바이오매스에너지(주) 대표 변용만

나. 주 소: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116-8(화치동)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(변경)

가. 사업의 목적: 집단에너지 공급설비(열병합발전소) 설치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수요처에 전력 및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의 분산형 전원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

나. 사업의 개요: 부지조성 기정 16,770m² → 변경 17,038m²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가. 위 치: 「기정: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116-8(화치동)

└ 변경: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48-33번지 일원

나. 면 적: 기정 16,770m² → 변경 17,038m²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: 2024. 5.23.~2026.12.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

| МШ | 위 치 | 지 번 | TI 0 | TI T1(2) | 시치머거/2 | 소 유 자 | | ul ¬ |
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연번 | 위 치 | 지 번 | 지 목 | 지 적(m²) | 신청면적(m²) | 주 소 | 성명 | 비고 |
| | | 48-8 | 장 | 60,956 | 16,770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| (주)LG화학 | 기정 |
| 1 | 여수시 화치동 | 48-33 | 장 | 6,814 | 6,814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| (주)LG화학 | 변경 |
| | | 48-34 | 장 | 10,224 | 10,224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| (주)LG화학 | 변경 |

- 7.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: 해당없음
- 8.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여수시 고시 제2024-304호

여수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여수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4. 7. 11.

- 1. 여수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 변경 조서 : 다음 조서
- 2. 여수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 변경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- 3.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여수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 변경 조서

1. 도시관리계획(유원지) 결정 변경 조서(변경없음)

| = | 도면표시 | 시설명 | 이 뒤 | 위 치 면 적(㎡) | | 최 초 | ק וט | |
|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구분 | 번호 | 시필경 | T 4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결정일 | 미끄 |
| 변경 | 7 | 굴전유원지 | 돌산읍 평사리 산244번지 일원 | 67,381.4 | - | 67,381.4 | 전고-192호 10.07.05 | |

2. 도시관리계획(굴전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 변경 조서

가. 유원지 조성계획 총괄표(변경없음)

| 시 설 명 칭 | 면적(㎡) | 구성비(%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
| 합 계 | 67,381.4 | 100.00 | |
| 시 설 부 지 | 44,985.9 | 66.76 | |
| 휴 양 시 설 및 유희시설 | 12,733.0 | 18.90 | |
| 편 의 시 설 | 25,368.9 | 37.65 | |
| 관 리 시 설 | 6,884.0 | 10.22 | |
| 녹 지 | 22,395.5 | 33.24 | |

나. 유원지 조성계획(세부시설) 결정 변경 조서(변경)

| | | | ㅂ和 | | 건축면: | 적(㎡) | | | 거츠무 |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시설 | 명 | 부지 면적 (㎡) | UEINT | | 연면적 | | 구성비 (%) | 건축물 높이 (m) | 비고 |
| | | | | 바닥면적 | 계 | 지상 | 지하 | (/0) | (m) | - |
| | 총 | 계 | 67,381.4 67,381.4 | 14,806.81 14,910.50 | 25,806.84 25,816.76 | 22,270.52 22,280.44 | 3,536.32 3,536.32 | 100.00 100.00 | | |
| | 시설 | 쿠지 | 44,985.9 44,985.9 | | | | | 66.76 66.76 | | |
| | | 소계 | 12,733.0 12,733.0 | 4,135.50 4,224.19 | 6,346.79 6,346.79 | 6,346.79 6,346.79 | - | 18.90 18.90 | | |
| l | 101동 | 빌라형 | 3,957.0 | 3,943.39 | 6,346.79 | 6,346.79 | - | 5.87 | 16.0 | |
| 휴양 | 115동 | 숙박시설 | 3,957.0 | 3,943.39 | 6,346.79 | 6,346.79 | - | 5.87 | 16.0 | |
| 시설 및 유희 | | 테마공원 | 8, <mark>776.0</mark> 8,776.0 | - | - - | - | | 13.02 13.02 | - | |
| 유희 시설 | | 고카트 | - | - | - | - | - | 0.0 | - | L=350m, B=4.0m 주차장옥상 설치(중복) |
| | | 체험장 | - | - | - | - | - | 0.0 | - | 설치(중복) |
| | | 대관람차 | - | 192.11 280.80 | - | - | - | 0.0 0.0 | 95.0 95.0 | |
| | | 소계 | 25,368.9 25,368.9 | 10,579.83 10,594.83 | 19,368.57 19,378.49 | 15,832.25 15,842.17 | 3,536.32 3,536.32 | 37.65 37.65 | | |
| | | 전시장(대) | 4,250.0 4,250.0 | 4,238.15 4,238.15 | 10,038.62 10,038.62 | 8,515.81 8,515.81 | 1,522.81 1,522.81 | 6.31 6.31 | 23.0 23.0 | |
| 편 | | 전시장(소) | 1,210.0 1,210.0 | 1,200.12 1,200.12 | 1,285.60 1,285.60 | 1,285.60 1,285.60 | - | 1.80 1.80 | 18.0 18.0 | |
| 의 | | 주차장 | 7,483.6 7,483.6 | 2,422.21 2,437.21 | 6,447.27 6,457.19 | 4,707.83 4,717.75 | 1,739.44 1,739.44 | 11.11 11.11 | 14.0 14.0 | |
| 시 | | 수영장 | 1,430.0 1,430.0 | 1,422.89 1,422.89 | - | - | - | 2.12 2.12 | 10.0 10.0 | |
| 설 | | 야영장 | 9,934.3 9,934.3 | 236.36 236.36 | 235.13 235.13 | 235.13 235.13 | - | 14.74 14.74 | 8.0 8.0 | |
| | | 근린생활 | 1,013.0 | 1,012.10 | 1,361.95 | 1,087.88 | 274.07 | 1.50 | 16.0 | |
| | | 시설 | 1,013.0 | 1,012.10 | 1,361.95 | 1,087.88 | 274.07 | 1.50 | 16.0 | |
| | | 전망대 | 48.0 48.0 | 48.0 48.0 | - - | - | | 0.07 0.07 | 17.0 17.0 | |
| 관 | | 소계 | 6,884.0 6,884.0 | 91.48 91.48 | 91.48 91.48 | 91.48 91.48 | - | 10.22 10.22 | | |
| 리 | | 도로 | 6,789.0 6,789.0 | - | - | - | - | 10.08 10.08 | | |
| 시 | | 물탱크 | 86.0 86.0 | 83.34 83.34 | 83.34 83.34 | 83.34 83.34 | - | 0.13 0.13 | 9.0 9.0 | |
| 설 | | 냉동창고 | 9.0 9.0 | 8.14 8.14 | 8.14 8.14 | 8.14 8.14 | - | 0.01 0.01 | 5.0 5.0 | |
| | 녹 | 지 | 22,395.5 22,395.5 | - | - | - | - | 33.24 33.24 | | |

더. 유원지 조성계획(세부시설) 결정 변경 사유서(변경)

| 구분 | 도면번호 | 시설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변경 | 1 | 대관람차 | ○ 대관람차 공작물 면적변경 - 건축면적 : 192.11㎡ → 280.80㎡ - 건축물 높이 신설 : 95.0m | ○ 대관람차 진·출입로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변경 |
| 변경 | - | 주차장 | ○ 주차장 창고증측 - 건축면적 : 9.92㎡(지상1층) | ○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증측 |

여수시 고시 제2024 - 30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을 승인(신고)하고 고시합니다.

| 승인 | 실시계획 | 시 | 행 자 | 사업착수 | 사업준공 | 점용·사용 | 7 11110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(신고) 번호 | 승인 (신고)수리 | 주 소 | 성 명 | 예 정 일 | 예 정 일 | 장 소 | 공사내용 |
| 2024-35 (2024.6.25.) | 2024. 7. 10. | 여수시 시청로 1 (학동) | 여수시장 (섬발전지원과) | 실시계획 승인일 | '25.2.28. | 여수시 남면 심장리 993-2번지 일원 | 우학항 어촌뉴딜300시업 |

2024. 07. 10.

여수시 공고 제 2024-2099호

공시 송달 공고

지적재조사사업(돌산 율림, 신복・율촌 가장・소라 대포・호명・주삼) 완료된 토지의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(조정금의 지급・징수 또는 공탁)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정금이 아직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독촉장송부 및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(압류의 요건 등)의규정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·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1. 공고대상: 108명(율림: 2, 신복: 6, 가장: 3, 대포: 21 호명: 4, 주삼: 3)
- 2. 공고기간: 2024. 7. 10. ~ 2024. 7. 24.(15일간)
- 3. 공고장소: 시보·홈페이지·돌산읍·율촌면·소라면·삼일동·주삼동사무소
- 4. 기타사항: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(☎061-659-3325, 3474, 3475)으로 문의 바랍니다.
- 5. 붙임 : 공시송달 조서 1부.

2024. 7. 10.

여 수 시 장(인)

여수시 공고 제2024-2016호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 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9일

여 수 시 장

1. 폐업대상 업체

| 상 호 | 영업 소재지 | 폐업대상 건설 업종 (등록번호) | 법인번호 (주민번호) | 폐업일자 | 폐업사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앰엔건설(주) (문기만) |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360, 1층 | 철근.콘크리트공사업 (여수 2007-10-01) | 206211-0033452 | 2024. 7. 9. | 회사사정 |

2. 공고 기간: 2024. 7. 9. ~ 2024. 7. 23.(14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세외수입(사용료) 독촉(체납)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

『국유재산법』제73조에 따라 세외수입(사용료) 체납자에게 독촉(체납) 고지서를 우편송달(등기우편)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여 수 시 장



1. 공고내용: 세외수입(사용료) 독촉(체납)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4. 7. 10.(수) ~ 2024. 7. 31(수) (21일간)

3. 공시송달 대상자

| લમા | 대 상 자 | | 브리레시 | 납부금액 | |
|-----|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|--|
| 연번 | 성명 | 주 소 | 부과대상 | (원) | |
| 1 | 문창훈 |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70-3 102동 1005호 (미평동) | 공유수면점사용료(여수시군자동224 번지/구거/12㎡) | 47,900 | |
| 2 | 김완석 |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566-78 | 공유수면점사용료(여수시군자동290 번지/구거/11㎡) | 78,200 | |
| 3 | 노만엽 |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4길2-7 (연등동) | 공유수면점사용료(여수시 연등동 314-10/하천/23㎡) | 108,940 | |
| 4 | 현천영농조합법인 김현주 |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1길 27-7 (신기동) | 농업생산기반외사용료(여수시소라 면현천리1088번지/구거/77㎡) | 83,240 | |
| 5 | 주식회사 남경개발 |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368 102동 101호(둔덕동, 데코빌리지빌라) | 농업생산기반외사용료(여수시소라 면관기리1151번지/구거/64㎡) | 112,540 | |

4. 공고방법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
5. 공시송달 내용

- 세외수입(사용료) 체납에 따른 독촉(체납)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(가상계좌)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6. 문의사항**: 여수시 건설과(건설행정팀) (☎061-659-4034)

2024년 7월 10일

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

2024년 제2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**신규 지정된**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(공고)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0일

여 수 시 장

1. 행정예고 내용: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.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내용 및 단속시행일자

| 연번 | 위 치 | 구간 | 내 용 | 단속시행일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-96 | 편측 101m |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| 2024. 7. 31. |
| 2 | 여수시 종고산길 6 옆 도로 | 편측 28m 반대편측 35m |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| 2024. 7. 31. |
| 3 | 여수시 화치동 1342 | 편측 455m 반대편측 66m |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| 2024. 7. 31. |

※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

나. 세부장소 : 【붙임 1】참고

2. 관련근거 :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
3. 예고(공고)기간 : 2024. 7. 11.(목) ~ 7. 22.(월), 12일간

4. 예고(공고)방법 : 여수시 홈페이지(http://www.yeosu.go.kr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

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(☎ 061-659-416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사항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CCTV 설치 위치,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 등)
- 나. 제출기한: 2024. 7. 11.(목) ~ 7. 22.(월) 18:00, 12일간
- 다. 제 출 처: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
- 라. 제출양식: 【붙임 2】참고
- 마. 제출방법: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
 - 방문/우편: 여수시 시청로 1.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(학동) (우)59673
 - *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
- **바. 문의사항**: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(☎061-659-4162)
 - ※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- 붙임 1.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.
 - 2. 의견 제출서 1부.

[붙임 1] 위치도 및 현장사진

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-96(편측 L=101m)



현 장 사 진



② 여수시 종고산길 6 옆 도로(편측 L=28m, 반대편측 L=35m)

현 장 사 진



③ 여수시 화치동 1342(편측 L=455m, 반대편측 L=66m)



현 장 사 진



[붙임 2] 의견 제출서

|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사 업 명 | 사 업 명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실시 | | | |
| 성 명 (개인/단체) | | | | |
| 의견 제출자 | 주 소 | | | |
| | 전화번호 | | | |
| 의견 제출 내용 | | | | |

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여 수 시 장귀하

고

비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등록말소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 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0일

여 수 시 장

1. 폐업대상 업체

| 상 호 | 영업 소재지 | 폐업대상 건설 업종 (등록번호) | 법인번호 (주민번호) | 폐업일자 | 폐업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범우티엠에스(주) (김종수) | 여수시 산단1로, 310-49 | 기계설비.가스공사업 (여수 2018-10-07) | 206211-0033494 | 2024.7.10. | 그 밖의 사유 |

2. 공고 기간: 2024. 7. 10. ~ 2024. 7. 24.(14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국동항 내 장애물(방치선박) 제거 공고

우리 시 국동항 내에 무단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(방치선박)이 국동항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, 소유자가 불분명하여「어촌・어항법」제4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,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7월 10일

- 1. 공고기간 : 2024. 7. 11. ~ 2024. 7. 17. (7일간)
- 2. 위 치 :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-1번지(서부어촌계 인근)
- 3.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: 소유자 불명의 무단 장기 방치선박(폐선)
- 4.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「어촌·어항법」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.
 - 나. 아울러, 국동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(소유자 파악 시)에 대하여는 「어촌・어항법」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(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)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- 5. 문의처 : 여수시 섬발전지원과(061-659-3991)

장애물(방지선박) 제거공고

| 적치장소 |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-1번지 일원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적치물 종류 | 방치선박(폐선) | | | |
| 어항관리청 |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4-013호 | | | |
| 처리 예정일자 | 2024년 7월 17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 | | | |
| 처리방법 |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(공매 또는 폐기 처분) | | | |
| 위반내용 | 어촌·어항법 제45조 위반 | | | |





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장애물(방치선박)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·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4년 7월 17일까지</u>여수시 섬발전지원과(061-659-3991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1일

장애물(방지선박) 제거공고

| 적치장소 |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-1번지 일원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적치물 종류 | 방치선박(폐선) | | | |
| 어항관리청 |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4-014호 | | | |
| 처리 예정일자 | 2024년 7월 17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 | | | |
| 처리방법 |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(공매 또는 폐기 처분) | | | |
| 위반내용 | 어촌·어항법 제45조 위반 | | | |





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장애물(방치선박)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·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4년 7월 17일까지</u>여수시 섬발전지원과(061-659-3991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1일

장애물(방지선박) 제거공고

| 적치장소 |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-1번지 일원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적치물 종류 | 방치선박(폐선) | | | |
| 어항관리청 |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4-015호 | | | |
| 처리 예정일자 | 2024년 7월 17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 | | | |
| 처리방법 |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(공매 또는 폐기 처분) | | | |
| 위반내용 | 어촌·어항법 제45조 위반 | | | |





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장애물(방치선박)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·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4년 7월 17일까지</u>여수시 섬발전지원과(061-659-3991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1일

장애물(방지선박) 제거공고

| 적치장소 |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-1번지 일원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적치물 종류 | 방치선박(폐선) | | | |
| 어항관리청 |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4-016호 | | | |
| 처리 예정일자 | 2024년 7월 17일 이후(공고 종료 이후) | | | |
| 처리방법 |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(공매 또는 폐기 처분) | | | |
| 위반내용 | 어촌·어항법 제45조 위반 | | | |





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장애물(방치선박)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·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<u>2024년 7월 17일까지</u>여수시 섬발전지원과(061-659-3991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1일

여수시 공고 제2024 - 2115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

공유수면 점·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7. 10.

여 수 시 장

1. 신청개요

| 신청인 | 점용사용 장소 | 목적 | 면적 | 사용기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여수시장 (섬발전지원과) |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818-6번지 일원 | 소뎅이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| 2,655 m² | 30년 |

2. 공람장소, 공람기간

O 공람장소: 여수시 해양정책과

○ 공람기간: 2024. 7. 10. ~ 2024. 7. 30.(20일간)

3.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

○ 제출기간: 2024. 7. 10. ~ 2024. 7. 30.(20일간)

O 제출방법: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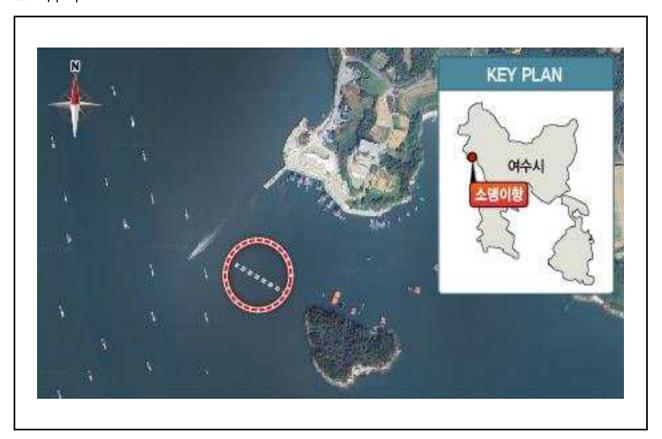
○ 제 출 처: 등기우편(여수시 신월로 648, 4층 해양정책과)

전자우편(pdean@korea.kr)

O 담 당 자: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

4.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(☎659-3972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위치도



여수시 공고 제 2024- 2116호

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

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지선으로 인하여 미관 저해, 선박 항해서 안전 위험,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7월 25일(목)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0일

- 1. 공 고 기 간 : 2024. 7. 10. ~ 2024. 7. 25.(15일간)
- 2.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: 양식용 폐 가두리
- 3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(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)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4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(☎061-659-3971)로 연락바랍니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여수시 공고 제 2024- 2116호

무단방치물 제거공고

| 발견장소 | 여수시 돌 |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산193번지 지선 공유수면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|--|
| 물건 | | 어업용 가두리 | | | | |
| 제 원 | | | | | | |
| 관 리 청 여수시청 관리번호 제2024-23 | | | | 제2024-2호 | | |
| 제거 예정일자 2024년 7월 25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 | | | | 문 이후) | | |
| 제 거 방법 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 | | |) | | | |
| 공매장소 | 소 및 일시 -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

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, 미관 저해,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4년 7월 25일(목)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0일

여 수 시 장

(담당자: 해양정책과 061-659-3971)

[여수시 공고 제2024-2120호]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933-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4. 7. 11.

여 수 시 장

1. 위 치 :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933-2번지

2. 도로면적 : 53 m²

3. 도로길이 : 26m

4. 도 로 폭 : 1.5m

5.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

| 人フリフリ | 71 HI | 71 P | 면 : | 적(㎡) | ш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공부면적 | 지정면적 | 비고 |
| 계 | | | 663 | 53 | |
| 소라면 현천리 | 933-2 | 대 | 663 | 53 | |

6. 관련도서 : 별첨참조

[별 첨]





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(융자)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(융자)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4년 7월 1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7. 11. 여 수 시 장

I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 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

□ 지원내용

- O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(소모품 제외)
 -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(별표 1)
 -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
 -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

□ 융자금 지워 규모

○ 총모집금액 : 400,000천원(융자금 320,000천원, 자부담 80,000천원)

O 지원한도

| 구 분 | 지원한도 | |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총사업비 | 융자지원 | 본인부담 |
| 신 설 | 80억원이하 | 64억원이하 | 16억원이하 |
| 증설 또는 개보수 | 50억원이하 | 40억원이하 | 10억원이하 |

□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

○ 융자 80%(연리 1%, 3년거치 7년분할상화), 자담 20%

Ⅱ.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

□ 지원자격

- O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
- O 기존 양식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
-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
-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
□ 제외대상

- O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
-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 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- O 양식산업발전법,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, 허가가 취소된 자
- O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. 다만, 동아 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

- O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
-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 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
-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. 다만, 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, 종자 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예외
- O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. 다만,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

Ⅲ.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

- □ 선정절차
 - O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융자지원규모 등 결정
 - O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순위 배정

□ 제출서류

- O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별지3호 서식
- O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(대출기관발급) 별지 4호 서식
 - 금융거래 확인서
 - 자부담 확보 증명
 - 사업 견적서
 -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(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예외)
 - 양식관련 면허증·허가증 사본

-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증명
- O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별지5호 서식
- O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별지11호 서식
- O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(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)

Ⅳ.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□ 신청기간 : 2024. 7. 12. ~ 7. 19. (8일간)
- □ 신청방법 :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방문 신청